#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469 발의연월일: 2022. 5. 2.

발 의 자:민형배·최기상·박상혁

이정문 • 박성준 • 송재호

송갑석 · 이용우 · 윤준병

강민정 • 황운하 • 김용민

정필모 · 장경태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 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부동산의 처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

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 다(안 제45조).

#### 법률 제 호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채무를 변제받 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은 제45조제2항 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생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①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부동
	산을 처분하여야 한다.